

대구예술대학교 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

(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4.08.19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4.12.02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의 학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예·체능학부 및 국제학부(외국인유학생)는 제외한다. (개정 2024.12.02.)

제2조(신입생 모집) 신입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라 모집한다.

제3조(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) ①학부에는 학부장과 각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둔다.
②학부장은 학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학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각 전공의 교육과정, 수업운영, 예산배정, 시설사용 등을 조정한다.

제4조(학부운영회의) 학부의 교과과정운영, 전공배정, 학생지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운영회의를 거친다.

제 2 장 전공선택

제5조(전공배정신청) ①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부소속내 전공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모집중지 전공 제외)

②전공배정시기는 제1학년 2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후 소정의 기간 내로 한다.

③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배정신청기간 중 전공배정신청서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재입학생 및 휴학생은 재입학 또는 복학 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전공배정대상자가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학부소속내 전공으로 자율 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전공배정인원 및 기준) ①전공별 인원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부에서 정하여,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 다만, 학생의 지망상황, 전공별 배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공별 배정인원을 증감 및 전공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지망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사정한다.

1. 학생의 희망
2. 기 이수과목의 성적에 의한 배정
3. 성적이 동점일 경우 등 각 전공에서 정하는 기준

제7조(전공배정계획) 학부장은 1학년 2학기 수업1/2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공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전공배정대상자

2. 전공배정일자
3. 전공배정신청기간 및 절차
4. 제출서류
5. 전공별 배정인원의 범위
6. 기타 전공배정에 관하여 학부별로 정한 사항

제8조(전공배정결과 공고) ①학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전공배정 명단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 승인 후 확정된 전공배정결과를 공고한다.

②전공이 확정된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복수전공 및 부전공)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.

제 3 장 학부 운영 등

제10조(학부 운영) ①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칙, 학칙시행세칙 및 우리 대학교 규정 내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전공배정 전에는 학부장의 승인과 전공배정 후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.

②삭제(개정 2024.08.19.)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기타) 학부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08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12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